

---

# 2026년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시행지침

---



경 기 도  
(친환경농업과)

# 2026년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시행지침

▶ 본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기도	친환경농업과	식량산업팀장 이용현 주 무 관 우도영	031-8008-5461 031-8008-5462

## 1. 목 적

- 벼 재배를 공동영농 중심의 지역특화작물로 대체 육성하여,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
  - 논 타작물 전환 시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작물 연계 육성 지원이 필요

## 2. 근거법령 :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

## 3. 사업개요

- 총사업비 : 2,000백만원(도비 800, 시군 800, 자부담 400)
  - 보조비율 : 도비 40%, 시군비 40%, 자부담 20%
- 지원대상 : 생산자단체
  - 공동영농 참여 면적(벼 대체), 농가수 및 운영현황 등을 반영한 대상자 선정 지원

### ▶ [생산자단체의 범위 및 요건]

-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및 유통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조직으로서
  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5호에 규정한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,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작목반·출하회 등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생산자단체
  - ※ 제외 :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,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

- 사업대상 농지 전제조건 : 농지 중 실제 ‘논’을 활용하여야 함
  - 벼 수급조절을 위한 ‘논’의 잠재 생산능력 및 기능적 형상 유지
    - ※ 사업 참여필지는 쌀 적정생산 시스템 감축 유형 ‘논 타작물 등’에 입력하여 실적 반영
- 지원품목 : 벼를 제외한 타 작물(전략작물·직불 하계작물\*은 지원품목에서 제외)

\*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중 하계작물 : 두류, 가루쌀, 옥수수, 깨(참깨, 들깨), 하계조사료, 수급 조절용벼, 알팔과, 수수, 율무 등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 사업 하계작물로 규정된 품목

- 정부정책과의 중복지원 방지 등으로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을 대상에서 제외함

※ 정부의 벼 대체전환(전략작물) 정책수혜가 없는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경기도형 지원사업임

○ 지원내용 : 지역특화작물(벼 대체)의 생산·운영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

- 공동영농 중심 확산을 위한 기계·장비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품목 지원

▶ [제외대상]

- 장비 중 개별 농기계 지원

※ 단, 공동이용 농기계는 가능하며 공동이용계획서 또는 규약(규칙)을 제출

- 운영비, 임차료,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

- 사무실 및 건축물(구조물 포함) 설치비, 부지구입비, 소모성자재 구입비, 차량구입비

- 인테리어·리모델링 비용, 전등 교체비용, 설비·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

- 기타 신청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·장비 등

○ 우선 지원 품목 및 가점부여 대상

- 벼 대체작물의 안정적 생산, 청년농업인·여성농업인 및 공동영농 육성 기여

▶ (우선지원) 「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조례」 제10조

-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된 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

· 지역특화작목 : 경기도 또는 시군 조례 등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한 작물

※ 지역특화작목이라도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이 아니어야하며, 사업 전제조건을 만족해야함

- 다년생 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

▶ (가점부여 대상) 청년농업인·여성농업인 육성 및 공동영농 확산

- 공동영농(벼 대체작물 참여면적) 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

- 청년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

·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거 40세 미만

·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

○ 지원한도 : 개소당 총사업비는 최대 5억 원 이내

○ 지원형태 : 자치단체자본보조

#### 4. 사업대상자 선정

○ 사업신청 요청 및 홍보(도 → 시·군) : ~ '26. 4. 20.

- 사업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 철저

- 시·군 사업대상자 선별 및 우선순위 제출(시·군 → 도) : ~ '26. 5. 8.
  - 신청 자격, 단가 산출 적정성, 자부담·부지 확보 여부, 당해연도 사업 추진 및 완료 가능성 필히 검토
  -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, 전문가 또는 시·군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제출
  - ※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

< 제 출 서 류 >

- ▶ 신청서류 사본 : [별첨 1]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
  - 사업계획서 내용 中 세부 사업내용은 별도 첨부 가능
- ▶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: [별첨 2]
- ▶ 사업계획 검토서 : [별첨 3]
  - ※ 경영장부, 회의록 사본, 정관, 논 이용 확인, 기타 사업심사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는 시·군에서 보관하고 道 현장확인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

-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(도 → 시·군) : ~ '26. 5. 22.
  - 시·군별 현장 확인 등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
- 사업대상자별 세부 실행계획 제출(시·군 → 도) : '26. 5. 29.
- 사업대상자별 세부 실행계획 승인(도 → 시·군) : '26. 6. 5.

## 5. 시행요령

- 사업주관 : 경기도 친환경농업과(시·군 : 농정부서)
- 사업시행 : 시장·군수
  - 시장·군수(사업자)는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추진, 영농기 이전에 착공 또는 시행하여 연도내 완료 추진
- 사업계획 변경
  -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 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승인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
  - ※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

○ 시공업체 선정

- 사업자는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,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장비는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

○ 설 계

-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장비는 개발된 설계도(한국식품연구원 등)에 따르고, 유사 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장비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
-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장비와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

○ 공사감리

- 사업자는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 및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 방지
  - 다만,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 장비와 시장·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장비는 감리 생략 가능
- ※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


○ 준공검사

- 시장·군수는 기계·장비가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준공검사 실시

○ 중요재산 관리

- 시장·군수는 지원품목(기계·장비 등)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관리(별첨5)

○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으로 설치한 주요 농기계·장비는 표지판을 설치

- 표지판에 道 - 시·군 문장(시그니처) 표기  / (시·군 시그니처)

《 기계 · 장비 》

가. 농기계 등 기계류 및 장비 등은 스티커형으로 설치

나. 내 용(안) : 규격은 대상물에 따라 적의 조정

道 시그니처	이 기계(장비 등)는 ○○○○년에 경기도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.	시·군 시그니처
-----------	--	-------------

## 6. 사후관리 및 처분제한 등

### ○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

중요재산의 범위	사후관리 기간
▶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- 부동산 : 보조금으로 지원된 건물,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한 대상 - 부동산의 종물 :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, 장치 등	준공일로부터 10년
▶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 - 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·장비류	구입일로부터 5년

-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전용, 양도, 교환, 임대,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철저 제한

### ○ 기계·장비의 양도, 임대, 이전, 용도변경 등

- 지원품목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, 양도, 교환, 임대,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 사전 승인절차 이행
- 입지 및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원품목의 이전,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 변경은 당해 시장·군수가 적격여부 검토 후 승인
- ※ 단, 재배작목 변경, 유통환경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가능

### ○ 중요한 재산의 공시 등

- 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해당 시장·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
- 시장·군수는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

### ○ 지원품목 관리·운영

- 사업자는 지원받은 품목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지원목적대로 관리·운영
- ※ 재산관리 및 운영 장부 비치, 경영실적 기록, 경영 교육 참가 등
- 시장·군수는 지원품목이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될 수 있도록

## 지도·점검계획 수립·시행

- ※사업별 관리대장(별첨5) 수정·보완 관리, 지도점검표(별첨6) 활용: 매년 1회 이상
- 시장·군수는 지도·점검결과를 토대로 미활용 품목 등 경영이 미흡한 기계·장비에 대한 이용 및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

## 7.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을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하되,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피위임자(시공업체 등)에게 지급할 수 있음
- **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**
- 정산 시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비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
  - ※ 시장·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
- 보조금 정산 시 사업 추진내역 및 자부담금 투입 여부 등 철저히 확인
- 자부담금이 부담비율보다 축소 투입된 경우 축소된 금액에 대해 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(도·시군비) 정산
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액을 지원 비율(도비, 시군비, 자부담)에 따라 정산 및 회수
  - 단,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,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시장·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

## 8. 행정(보고)사항

-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(별첨7) : 분기 익월 10일까지(7월, 10월)
- 사업계획변경 보고(별첨8) : 변경승인 즉시
-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(별첨9) : 다음년도 1. 31.까지
-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: 다음년도 1. 31.까지



##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]

경기도에서 시행하는 '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'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### ▶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·이용목적	보유·이용기간
대표자명, 연락처, 주소, 생년월일/ 참여농업인 성명, 연락처, 주소, 생년월일/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등 사업추진 시 필요정보	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적합 대상자 선정, 예산집행, 사업 관리, 중복·부정수급, 환수 및 제제 조치 관리, 사후관리(의무 이행)	5년 (또는 중요재산 사후 관리기간 이후 폐기)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'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'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 동의

 미동의

### ▶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 항목	보유·이용기간
경기도 및 담당 시·군	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적합 대상자 선정, 예산집행, 사업 관리, 중복·부 정수급, 환수 및 제제 조치 관리, 사 후관리(의무이행)	대표자명, 연락처, 주소, 생년월일/ 참여농업인 성명, 연락처, 주소, 생년월일/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등	5년 (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이후 폐기)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'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'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 동의

 미동의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본인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시장·군수 귀하

# 사 업 계 획 서

## 1. 일반현황

가. 기본현황

- 단 체 명 :
- 사업위치 :
- 참여농가 : 호(남 , 여 )
- 재배작목 :
- 재배 · 출하현황('25년말 기준)

품 목	농가수(호)	공동면적(m <sup>2</sup> )	생산량(톤)	매출액(백만원)	주 출하처	비고
계						

○ 시설 · 장비 보유현황

- ex 하우스(10농가 2,000m<sup>2</sup>), 저온저장고(2동 90m<sup>2</sup>), 농기계 등
- 

○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

-

나. 최근 5년간 정부(지자체 포함) 사업 지원현황

구분	사 업 명	사업내용	재 원 별(백만원)					
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자담	기타
계								
'25								
'24								
'23								
'22								
'21								

※ 국 · 도비 지원사업 및 시 · 군 자체 지원사업 포함 작성

## 2. 사업계획

### 가. 사업 목적 및 필요성

- 
- 

### 나. 사업내용

- 사업위치(부지) :
- 벼 대체작물 참여면적 : 필지,      $m^2$ (붙임1 첨부 - 필지별 현황)  
 ※ 참여대상 농지가 실제 '논'이어야 함(시군 확인 및 직불금 등 자료 활용)
- 공동영농 참여농가수 :     호(청년농     호, 여성농     호)
- 세부사업내용

구분	세부내역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업비(천원)			자부담
				계	보조		
					도비	시군비	
합계							
농기계	계						
장비	계						

※ 단가 산출 근거자료 첨부(견적서, 정부표준가격 등)

○ 자부담 확보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금 액(천원)	확 보 계 획

※ 증빙자료 첨부(통장사본 등)

○ 공동영농을 위한 연계 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구분	확 보 계 획
공동조직화(교육·컨설팅) 분야	
공동작업 분야 (파종, 방제, 수확 등 핵심작업)	
공동정산 분야 (구매, 출하 및 수익 배분 등)	
기타 분야	

○ 판로 확보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생산량(톤)	판 로 계 획

○ 사업추진일정(월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)

월 별	추진계획(농기계 및 장비별)	비 고
1월		
2월		
3월		
4월		
5월		
6월		
7월		
8월		
9월		
10월		
11월		
12월		

### 3. 기대효과

#### 가. 단기 발전계획

○ 정량적 효과(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기대효과)

구 분	사업 전 (2025년)	사업 1년 후 (2027)	비 고
○ 공동영농재배면적(m <sup>2</sup> )			벼 대체작물 식재 면적
○ 참여 농가수(호)			
○ 생산량(톤)			
○ 총매출액(백만원)			
○ 수출(톤/백만원)			
○ 경영비(백만원)			
○ 농가소득(백만원)			
○ 품질향상			
○ 일자리 창출(명)			
○ 기타	·		
	·		

※ 생산목표, 소득목표, 유통개선,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계량화

○ 정성적 효과(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효과)

-  
-

#### 나. 중장기 발전계획

○ 사업 5년 후(2031년 이후)

-  
-

※ 조직화 계획, 영농규모, 품질향상, 판로확대, 수출확대, 농가소득 증대, 부가가치, 일자리 창출 계획 등 중장기 발전계획 작성



[별첨 2]

##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

(○○시군)

### □ 시군 차제 결과

구분 (우선 순위)	법인 (단체)명	지역특화작물명 (벼 대체작물)	벼대체 재배면적 (m <sup>2</sup> )	참여 농가수 (호)	사업비(천원)			
				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
계								
1								
2								

[별첨 3]

## 사업계획 검토서

1. 법인(단체)명 :
2. 지역특화작물명(벼 대체작물) :
3. 참여농가(호) 및 참여면적(m<sup>2</sup>) :        호,        m<sup>2</sup>(필지 00 수)
4. 사업대상의 적격여부

	신청자격	지원내용	신청절차의 적합성	사업부지
<b>확인사항</b>	*생산자단체의 범위 및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	*사업내용에 지원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	*신청사업이 총회 또는 이사회, 기타 의사결정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업인지 여부	*사업부지 확보 및 참여 조건 충족 여부
<b>확인결과</b>	적합 또는 부적합	적합 또는 부적합	적합 또는 부적합	확보 또는 미확보

### 4. 사업계획의 적정성

- 사업능력 \* 자부담 능력, 영농경력, 조직력, 영농기술, 경영능력, 영농규모 등  
-
- 사업계획 \* 계획의 적정성, 사업전망 등  
-
-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
-
- 사업부지(참여필지)에 사업추진 가능 여부 및 집적화(필지 밀접도)  
\* 집적화는 생산단지 중심지(복수 지정가능)로부터 반경 5km이내 분포 여부 확인  
-
- 입지여건 \* 생산 또는 원료조달, 용수, 전력 등  
-

## 5. 품목의 특화가능성

- 품 목 명 :
- 연도별 재배현황(시·군 전체 현황)

구 분	단 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농 가 수	호					
면 적	m <sup>2</sup>					
생 산 량	톤					
매 출 액	백만원					
수 출	수출량	톤				
	금 액	백만원				

- 향후계획 \*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지원계획

-  
-

## 6. 종합의견(시장·군수 의견)

- 
- 
- 
- 

고양시장



[별첨 5]

##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관리대장

□ 사업명 :

[사업대상자 현황]							
사업자 (단체명)			대표자				
소재지							
농가수(호)			설립년도				
작물명			참여면적	필지수	개,	면적 m <sup>2</sup>	
연락처			FAX				
기계· 장비현황	(기계·장비명)	(기계·장비명)	(기계·장비명)	(기계·장비명)	(기계·장비명)	(기계·장비명)	
	대	대	대	대	대	대	
운영현황	전년말 (○○○○년)	· 영농규모 : 호, m <sup>2</sup>		금년말 (○○○○년)	· 영농규모 : 호, m <sup>2</sup>		
		· 생산량 : 톤(본)등			· 생산량 : 톤(본)등		
		· 총매출액 : 백만원				· 총매출액 : 백만원	
		· 수출액 : 백만원				· 수출액 : 백만원	

[사업추진내역]						
사업기간						
사업장소재지						
사업내역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	완료일자 (구입일자)
		계	도비	시군비	자담	
계						

\* 기계구입의 경우 기종별로 각각 기재 - 칸이 모자랄 경우 별지로 작성

\* 사업량은 수량과 용량을 병기(예 : 트랙터 100마력/1대)

# [ 사 진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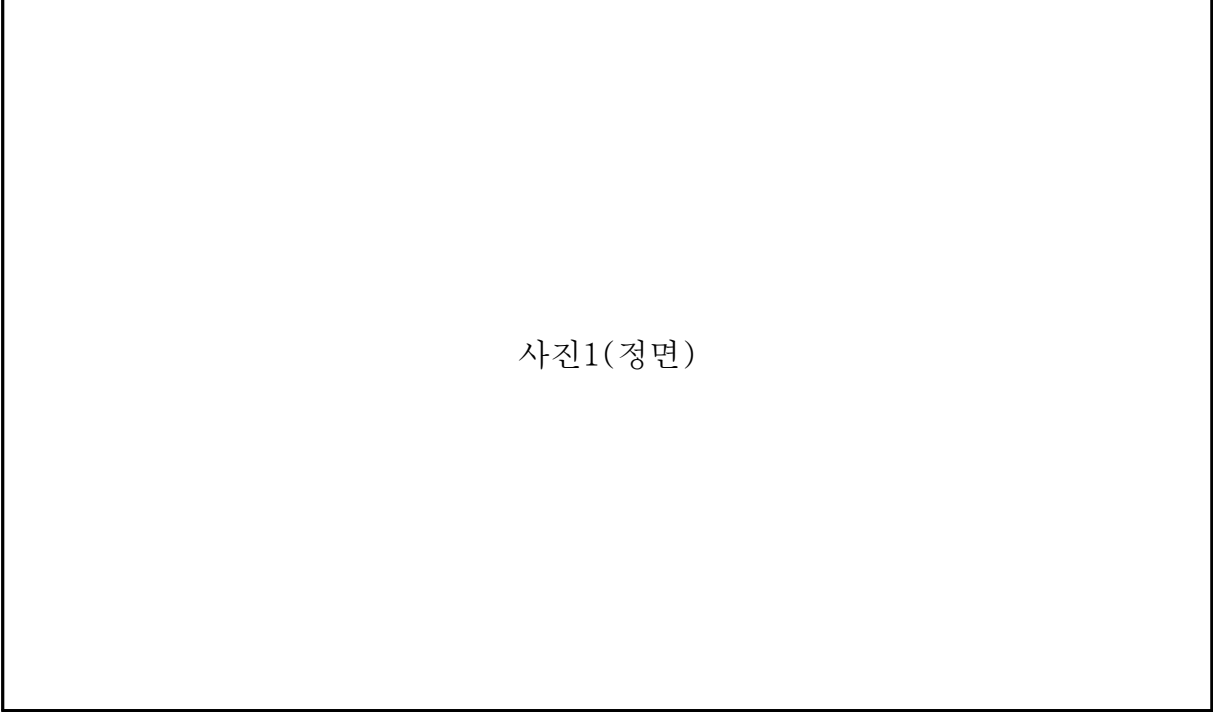


사진1(정면)

(사진설명-간략히)



사진2(측면 등)

(사진설명-간략히)

기계·장비 및 기종이 많을 경우 사진 별도(추가) 첨부



[별첨 7]

##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서(3·4분기)

① 사업명 :

② 사업개요

○ 대상자 : (대표자 : HP )

○ 작물명 :

○ 참여면적 : 필지, m<sup>2</sup>(참여 농가수 : 명)

- 계획량 : 필지, m<sup>2</sup>(참여 농가수 : 명)

③ 추진상황

○ 예산집행내역(천원)

계 획(A)				실 적(B)				집행율 (B/A)
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

○ 사업추진진도

세부 사업내용	농가수	사업량	추진실적	진도율 (%)
계				
.				
.				
.				

④ 향후계획

○

○

⑤ 문제점

○

○

⑥ 대책

○

# [ 사 진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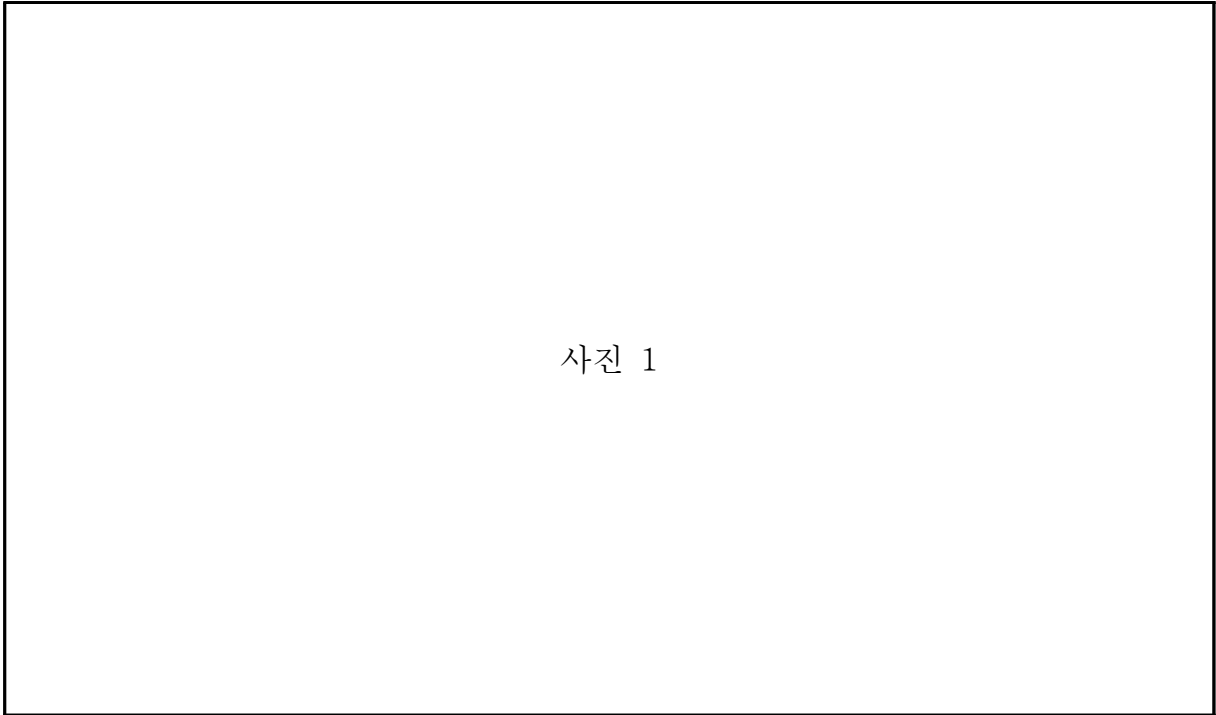


사진 1

(사진설명-간략히)



사진 2

(사진설명-간략히)

기계·장비 및 기종이 많을 경우 사진 별도(추가) 첨부

[별첨 8]

## 사업계획 변경 보고(서식)

**1 사업명 :**

○ 사업대상자 : ○○○○ 영농조합법인 (대표자 : ○○○)

**2 변경사유**

○

**3 변경내역**

○ 재배면적 : 당초) 필지수 개, m<sup>2</sup> → 변경) 필지수 개, m<sup>2</sup>

○ 사업비(천원)

변경 전(A)				변경 후(B)				대 비(B/A)
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

○ 사업내용

구 분	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	
	농가수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농가수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
			계	보조	자담			계	보조	자담	
계											
o ex)트랙터 구입	2	2대 ×50마 력				3	3대× 50마력				
o											
o											
o											

**4 추진일정**

- 
- 
- 


**5 완료예정일 : . . .**

[별첨 9]

## 지역특화작물 육성 사업 완료보고서

1 사업명 :

2 사업개요

- 사업자(법인)명 : (대표자 : ,  )
- 참여 농가 : 명
- 생산품목 :

3 추진상황

- 재배(참여)면적 :  $m^2$ (달성률 %)  
- 계획) 필지수 개,  $m^2 \rightarrow$  실적) 필지수 개,  $m^2$
- 예산집행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계 획(A)				실 적(B)				대비(%) (B/A)
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

○ 사업완료 내역

세부사업명	사업량	추진상황	추진진도(%)
계			

4 향후 추진계획

○

5 문제점 및 대책

○

6 사업성과

○

7 추진결과(사업별 사진첨부)

완료사진

《 》	《 》
《 》	《 》
《 》	《 》